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2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34,328,350	19,029,851
일반회계	634,328,350	19,029,85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"해당사업 없음"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"해당사업 없음"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"해당사업 없음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,17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